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김천행복한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김천행복한요양원

1 계약사항

시설과 입소자(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 ① 계약 당사자
- ② 계약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정원: 노인요양시설 20명, 주야간보호 9명
 - 직원현황

직종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장	1명(겸직)	1명(겸직)
사회복지사	2명	1명
간호조무사	1명(겸직)	1명(겸직)
요양보호사	10명	2명
조리원	1명	1명
총원	15명	6명

-차량: 승합차 1대, 승용차 2대

-설비

구분	면적(㎡)	설비내역	비고
침실	1호실	19.89	침대, 이불, 수납장
	2호실	28.8	침대, 이불, 수납장
	3호실	15.84	침대, 이불, 수납장
	특별실	13.86	침대, 이불, 수납장
	5호실	36.27	이불, 수납장
	6호실	24.57	침대, 이불, 수납장
	7호실	29.07	침대, 이불, 수납장
사무실	47.16	컴퓨터, 책상, 기타	공용
프로그램실	46.98	TV,기타	공용
생활실	29.79	TV,기타	주야간보호
물리치료실	18.36	안마기, 저주파치료기	공용
화장실	19.44	변기	공용
식당 및 조리실	25.2	주방용품	공용
복도 및 계단 및 기타	118.11		공용
의료 및 간호사실	11.34	집기류	공용
현관	8.25	신발장	공용
세탁실	5.67	변기	공용
비상재해시설	6.93		공용
총 면적	505.53		

비 용

김천행복한요양원

2 월이용료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1 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81,750
	장기요양 2등급	75,840
	장기요양 3, 4, 5등급	71,620

※ 비 급여비용 대상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① 식사 재료비 1식 2,200원
- ②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대상자 (12% / 8%)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수급자 (0%)
`23년	초진(17,320)	3,460	2,070 / 1,380	1,380	0
	재진(12,380)	2,470	1,480 / 990	990	0

2. 주야간보호

(1)등급별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주야간보호 1일 8시간이상 15일이상이용시 20% 추가산정)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1 일당)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 비 급여비용 대상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① 식사 재료비 1식 2,000원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비율

김천행복한요양원

급여종류	일반	40%경감자*	60%경감자**	기초수급자
시설급여	20%	12%	8%	면제
재가급여	15%	9%	6%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4.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아·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직종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비고
식대 1식	2,200원	2,000원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아·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아·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5.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3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